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원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64
----------	------

발의년월일 : 2021. 04.

발의의원 : 김원규 의원
안경은 의원
박갑상 의원
김재우 의원
전경원 의원
윤기배 의원
김태원 의원
임태상 의원
강성환 의원
이진련 의원

1. 제안이유

- 가.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의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도로명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시행('21.6.09)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나.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을 통하여 생활전반에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과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나.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광고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
- 다.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
- 라.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 업무의 위임·위탁, 토지 등 출입증(증표, 발급대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붙임1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 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또는 건물번호판의 훼손·분실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별표 2의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구·군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등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임·위탁)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도로명 부여, 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고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토지 등의 출입증 등)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06.09>

(앞 쪽)

계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 [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 계 법 령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 ⑦ (생략)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 ⑥ (생략)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 ⑥ (생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 ⑥ (생략)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

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 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수입 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납부 받은 수수료가 과오납되는 등 잘못납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 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3.2.]

[별표 2] [신설 2012. 11. 12 조례 제4443호] <개정 2017.3.2.>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시·구	수수료 ※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3,000원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20,000원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을,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이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